

휴대전화

전자우편

mkim1795@daum.net

보안 설정

아니요

## 민원 신청 내용

민원종류

일반민원

제목

서울시경찰청, 청장 박정보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을 고발한다

내용

고소인: 김명호

피의자: 서울시경찰청, 청장 박정보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

제목: [형법] 제122조(직무유기), 제123조(직권남용), 제227조의  
2(공전자기록위작·변작), 제30조(공동정범)

피의자들은

[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](이하 "경찰법") 제28조  
(시·도경찰청장) 제3항과 [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] 제33조  
(청문감사인권담당관) 제2항에 규정된 의무 가진 경찰들로서,

[경찰법] 제5조(권한남용의 금지) "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 
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 
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켜야 하며, 부여된 권한을  
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

에 따라, 소속 공무원 지휘/감독함으로써, 불가침의 국민 권리에 대한 침해 방지에  
만전을 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

소속 공무원에게 "전자 문서 위조 및 변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설비  
제공"함으로써, 불가침의 국민 권리들 침해하고 있다.

피의 사실

고소인은, 2026.3.19일 은평경찰서의 [주차장법] 위반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,

서울시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고(1AA-2603-0768486)  
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오승표가 처리담당으로 배정되었는데,

오승표는

1. "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렵다"는 이유로  
연장하고는

2. 처리기관 및 담당을 은평경찰서의 이주철로 변조한 것이다

조작 과정: 3.27일 담당 오승표(자료1, spoh20260327.jpg) ⇒ 3.29일 담당  
공란(자료2, empty20260329.jpg) ⇒ 3.31일 담당 이주철(자료3,  
jcllee20260331.jpg)

3. 하여 고소인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오승표 기피 및 징계 신청하였더니,  
기피신청 묵살하며 범죄자 오승표 자신이 담당(자료4, oh2.pdf)... 혼자 북치고  
장구치며 불가침의 국민 권리 보호 의무의 경찰이 국민 권리 짓밟고 자빠진 거다

[결론]: 피의자 박정보, 서기용은 직무유기, 직권남용은 물론,

"전자 문서 위조 및 변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설비 제공"함으로써

[형법] 제227조의 2(공전자기록위작·변작)의 공동정범([형법] 제30조)인 것이다

조작이 일상화된 경찰년놈들 엄벌에 처해라(참조: <https://seokgung.com/inforequest.htm#ex>)

첨부 자료

1. spoh20260327.jpg

2. empty20260329.jpg

3. jcllee20260331.jpg

4. oh2.pdf

첨부 파일

oh2.pdf spoh20260327.jpg empty20260329.jpg jcllee20260331.jpg

---

**처리기관 정보**

처리기관	대검찰청 (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)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604-0268517
접수일	2026-04-06 21:52:23
담당자(연락처)	()
처리에정일	2026-08-14 23:59:59
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 
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